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0. 22)

1. 심사 경과

- 가. 2004. 10. 4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4. 10.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14호)
- 다. 2004. 10. 22 :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회계과장 장석기)

가. 제안 이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천시여비조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여비조례 ⇒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2) 업무이관 및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행정자치부장관 ⇒ 중앙인사위원회
- 예산청장 ⇒ 기획예산처장관

3)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명칭 정비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 삭제

다. 관계 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 관용차량관리규정,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서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사천시여비조례를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조례제명의 명료성을 위한 것이며
 - 제4조2호 및 6호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 4. 18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 제4조3호를 삭제하는 것은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3. 7. 14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 가결 의견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